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비교

구 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제도도입 시기	- 2000.10. 1	- 2013. 7. 1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가구 :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 ※ 2인가구(1,027천원), 4인가구(1,630천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신청가구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8% 이하 ※ 2인가구(698천원), 4인가구(1,108천원) · 재산기준 : 1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 소득기준 :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이하 ※ 2인가구(4,828천원), 4인가구(5,945천원) · 재산기준 : 5억원 이하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 · 생계급여(보충급여) : 2인가구(647천원~0원), 4인가구(1,028천원~0원) · 주거급여 : 2인가구(183천원~0원), 4인가구(200천원~0원)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29,500원/인, 연1회), 부교재비(38,700원/인, 연1회), 학용품비(52,600원/인, 연1~2회) · 해산급여 : 600천원/인 · 장제급여 : 750천원/인 · 자활급여 : 자활사업 참여시 노임 지급(24,080~85,020원/일)	- 생계급여(기초수급자의 1/2 수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기초수급자 동일 수준) · 생계급여(3단계 차등급여) : 2인가구(115~355천원), 4인가구(175~515천원) · 교육급여 :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대(129,500원/인, 연1회), 부교재비(38,700원/인, 연1회), 학용품비(52,600원/인, 연1회) · 해산급여 : 600천원/인 · 장제급여 : 750천원/인
추진실적	- 203,148명('14.1월말 현재 안원)	- 25,407명('14.2.13 기준, 누계) · 서울형 6,015명, 기초수급자 12,339명, 타 복지 7,053명
2014년 추진목표	- 205,629명 (전년 대비 증가율 1.3% 적용)	- 60,000명(누계) : 서울형 1만6천명, 기초수급자 2만8천명, 타 복지 1만6천명 - '14년 신규 발굴: 37,000명 · 서울형 1만명, 기초수급자 1만7천명, 타 복지 1만명
예산매칭 비율	- 일반수급자 : 국비(50~60%), 시비(25~28%), 구비(12~25%) - 시설수급자 : 국비(50%), 시비(50%)	- 시비 전액
2014년 사업비	- 총 589,587백만원 · 시비: 194,026백만원, 국비: 395,561백만원	- 27,307백만원(시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인원은 동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발굴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인원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기초수급자, 타 복지서비스 연계 실적을 포함한 인원임

2014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세부기준 안내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8%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최저생계비의 68%	410,314	698,644	903,800	1,108,958	1,314,115	1,519,272	1,724,429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044,434	4,828,860	5,387,007	5,945,155	6,503,304	7,061,451	7,619,599
재산기준	5억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애급여, 해산급여
-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		23%초과 46%이하		46%초과 68%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38,783	205,000	277,565	145,000	410,314	75,000
2인	236,306	355,000	472,612	235,000	698,644	115,000
3인	305,697	420,000	611,394	280,000	903,800	140,000
4인	375,089	515,000	750,177	345,000	1,108,958	175,000
5인	444,480	610,000	888,960	410,000	1,314,115	205,000
6인	513,871	705,000	1,027,743	470,000	1,519,272	235,000
7인	583,263	800,000	1,166,526	535,000	1,724,429	270,000

〈표〉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 제도

지원대상 가구	사 업 명	재 원	수행기관	추진근거	지원 내용
최저 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제도	국고보조사 업 국비:시비: 구비 (58.6:28.6:1 2.8)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 생계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 감면제도 - 주민세, 과태료50%감경, 주민등록표수수료 면제, 티비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요금 감면, 전화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수수료지원 등
최저 생계비 68% 이하	서울형기초보 장제도	전액시비	시 ↓ 자치구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 제43조 제5항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생계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최저 생계비 150% 이하	긴급복지지원	국고보조사 업 국비:시비: 구비 (50:25:25)	보건복지부 ↓ 시 ↓ 자치구	• 긴급복지 지원법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권,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생계비 지원은 120% 이하
최저 생계비 200% 이하	희망은돌 위기긴급 지원	민간재원	재 단 ↓ 거점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생계비, 냉난방비, 주거비, 의료비, 집수리 비용
	주거 위기가정 발굴 지원	민간재원	사회복지협 회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2조	• 의료비, 임차보증금
	희망마차	민간재원	사회복지 협의회 ↓ 거점기관, 자치구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식료품, 생활용품, 난방용품 등

〈표〉 긴급복지지원과 희망온돌기금 지원 내용

구분	내용	긴급복지지원		희망온돌기금 지원	
		금액	최대횟수	금액	최대횟수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08만원 (4인기준)	6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300만원	2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주거지원	국가·지자체 소유 일시거 소제공 또는 타인소유 일시거소(고시원, 월세 등)	59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권	시설입소 또는 이용비용	134만원 (4인기준)	6회	-	-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 지원비, 학용품비	초등 204,700원 중등 325,900원 고등 399,300원	2회	-	-
연료비	가스비, 난방유 등	88,800원 (동절기: 10월~3월)	6회	30만원	3회 (동절기 4회)
해산비	분만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	60만원	1회	-	-
장제비	장례소요비용	75만원	1회	-	-
기타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요금) 50만원	1회	집수리비용 (수도, 보일러 공사, 도배장판 등) 30만원	1회

연도별 기초보장수급자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 월
인원	186,0	197,0	204,0	205,0	214,0	215,0	207,0	200,0	203,0	203,0
(증가 율)	00 (9.9)	00 (5.6)	00 (3.5)	00 (0.7)	00 (4.4)	00 (0.2)	00 (-3.6)	00 (-3.1)	00 (1.3)	00 (0.07)
서울시 (인구대 비%)	(1.81)	(1.90)	(1.95)	(1.96)	(2.05)	(2.03)	(1.96)	(1.92)	(1.95)	(1.95)
전국 (증가 율)	1,513,3 52 (6.2)	1,534,9 50 (1.4)	1,549,8 48 (1.0)	1,529,9 39 (-1.3)	1,578,3 79 (3.2)	1,549,8 20 (-1.8)	1,482,0 00 (-4.4)	1,395,1 03 (-5.9)	1,350,8 91 (-3.2)	1,349,0 07 (-0.14)
(인구대 비%)	(3.10)	(3.13)	(3.15)	(3.08)	(3.23)	(3.07)	(3.05)	(2.8)	(2.69)	(2.68)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공약(문제진단)

새누리당의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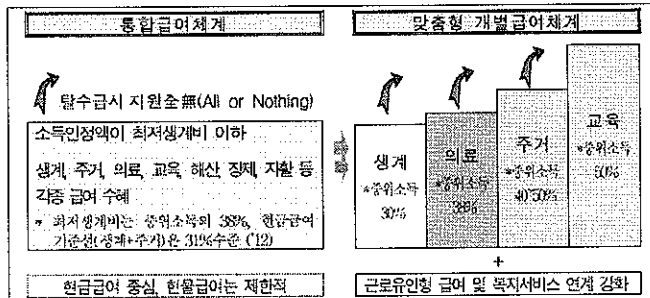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는 수급자에게 복지혜택이 집중되어 차상위계층과의 소득격차 등 부작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와 탈수급 가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탈수급시 급여 및 서비스 중단·감소와 사회보험료 등 새롭게 발생 하는 비용부담이 편의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

새누리당의 약속

- 수급자 중심이었던 통합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확대 개편
- 생활양역별로 다양한 정책대상별 맞춤형 급여 및 서비스 제공
 - 의료, 교육, 주거급여는 부처간 긴막아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간 연계 및 통합을 통해 각 생활양역별 맞춤형 급여체제로 재설계
 - 문화, 에너지, 통신 등 다양한 생활양역별 기존 복지사업을 통합·조정 하여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급여 및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체계 재설계 운영

나. 주요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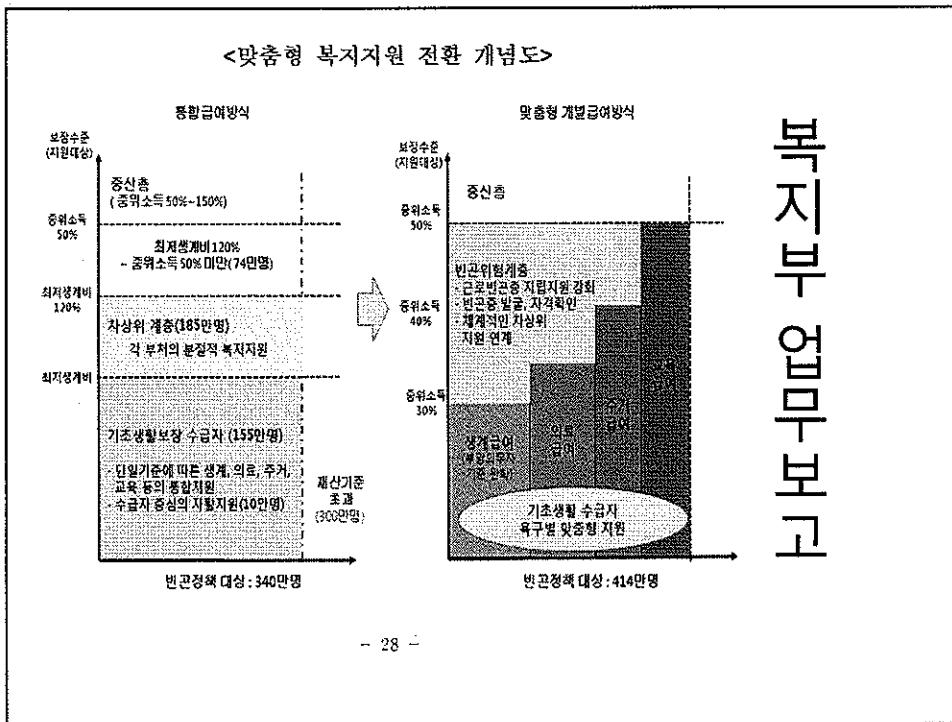
- 1 (빈곤예방정책 강화)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중산층 도약 기반 마련
- 2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도입)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조정·통합



< 분야별 지원프로그램 연계·조정·통합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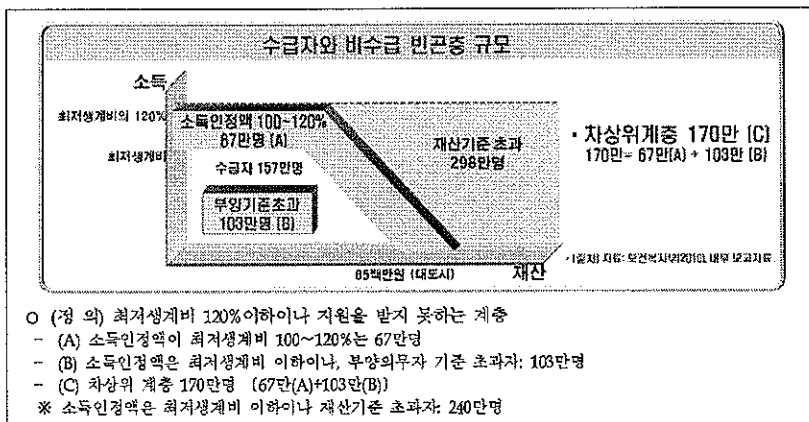
- ▶ (주거) 주거바우처 도입, 저소득 민간임차가구 임대료 지원
- ▶ (교육) 교육급여를 학비·급식비·방과 후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
- ▶ (에너지) 에너지 바우처 도입, 확산·축서기 에너지 지원, 지원사업 통합 강구
- ▶ (통신) 급여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통신비 지원방안 검토
- ▶ (문화) 통합형 여가바우처를 도입,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 확대

인수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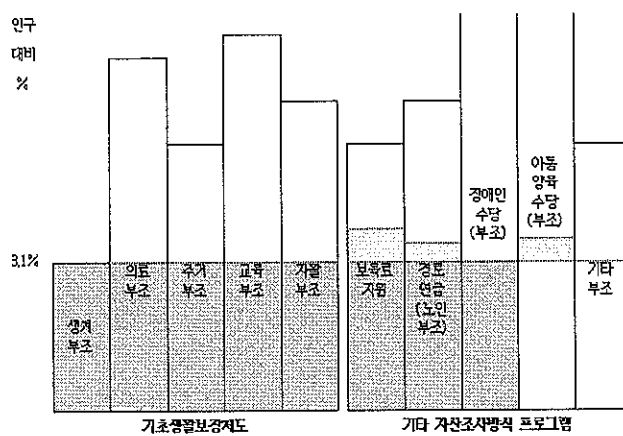


사각지대 규모와 분포

[그림 3]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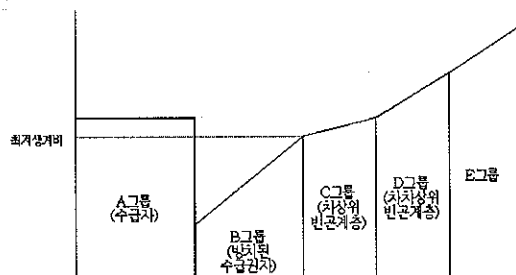
2002년도의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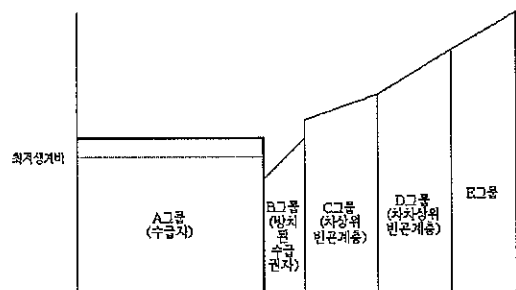
(참고) 수급자에 대한 현행 급여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행급여 추가되어야 할 급여

<그림-5> 공공부조의 체계화방안에서의 각 프로그램별 수급자 규모(인)

18 | 손계단향대의 발표(2002. 4.)



<그림-6> 현행 기초보장제도에 의한 급여 후 계층별 생활수준의 비교



<그림-7> 공공부조제도 체계화 방안에 의한 급여 후 계층별 생활수준의 비교